



엑스포 개최장소로서 기반시설 조성과 지속적인 대규모 이벤트 유치를 위한 관광지로 탈바꿈하여 국내·외 관광객 유치로 관광소득증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코자 함.

### 3. 주요골자

- 지구단위계획면적 :  $A=348,464\text{m}^2$ (105,410평)
  - 공공시설용지 :  $A=61,243\text{m}^2 \rightarrow 76,326\text{m}^2$ (증15,083 $\text{m}^2$ )
  - 관광·휴양시설용지 :  $A=145,366\text{m}^2 \rightarrow 103,907\text{m}^2$ (감41,459 $\text{m}^2$ )
  - 녹지및기타시설용지 :  $A=141,855\text{m}^2 \rightarrow 168,231\text{m}^2$ (증26,376 $\text{m}^2$ )
- 건축물의규모(건폐율, 용적률, 높이)
  - 지정규모(준도시지역) : 건폐율 60%이하, 용적률 200%이하, 높이 5층이하
  - 권장규모(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) : 건폐율 60%이하, 용적률 150%이하, 높이 5층이하, 시설물 높이 20m이하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, 그 의견이 타당할시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있어, 1984. 6. 21 당항포관광지로 지정되고 1984. 9. 22 경남고시 제336호로 조성계획이 승인된후 7차에 거쳐 변경되었으며,
- 주5일근무제 확대실시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로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최대한 누리하고자 하는 국민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비 기존 당항포관광지 전승유적지를 “소년 이순신”을 주제로한 리노베이션 및 신규개발지에 2006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 장소로서 기반시설 조성

과 공룡을 테마로한 휴식공원 조성으로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드는 해양관광지로 발전시켜 국내·외 관광객 유치로 관광 소득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

-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입안내용을 보면, 회화면 당항리, 봉동리 일원 348,464㎡(계획관리지역, 관광·휴양개발진흥지구,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)에 대하여 기존 용도지역, 용도지구, 제2종 지구단위 전체 계획면적(348,464㎡)은 변경이 없고, 세분된 용도지구 용지중 관광·휴양시설 용지를 축소하여 공공시설 용지 및 공원·녹지용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, 공공시설용지의 주차장 부지는 축소 조정 되었으며, 관광휴양시설 용지중 엑스포주제관, 야외플장, 다목적 잔디광장(축구장) 등은 확대 조정 되었음.
-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조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(용적률 150%이하)을 적용하였으며,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의 건은 2004. 2. 7 고성군 공고 제2004-41호로 공람 공고 하였음.
- 장래 엑스포 개최이후 관광지 기능과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“숲” 개념의 해양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제2종 관광·휴양형 지구단위 계획 면적 조정의 타당성,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입안 부서의 적절성, 대규모 사업비 소요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및 방법, 특히 2006년 이후 민자유치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, 환경영향 및 교통영향평가 내용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제시가 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은 도시과에서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 절차를 밟아서 도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해도 되는지?

- 답 : 문화관광과에서 입안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도 하자가 없음
- 문 : 해변 카페는 2006년 엑스포 개최이후 변경이 가능한지?
- 답 : 2006년 엑스포 개최이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으면 가능함.
- 문 : 엑스포 관련 실과장과 의회의원들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종합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용의는?
- 답 : 예, 알겠습니다.

6. 토 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2004. 3. 1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견